



# 서울문화재단

문화가 꿈  
문화가 고향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## 제목 2015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업비 예산변경 승인 요청(2차)

1.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-146(2015.03.05.)호 “2015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(서울문화재단)”,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-1887(2015.12.15.)호 “학교예술강사 5개년 건강검진 미 실시 위반사항 시장명령 관련 회신의 건(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-10542(2015.12.04.)호 “시장명령” 건)” 관련합니다.

2. 위 각 호와 관련, 예술강사의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관련 과태료 납부 및 잔여예산의 활용 등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목간 금액 증감을 하고자 합니다.

- 아 래 -

- 사업명 : 2015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※ERP시스템 내 사업명 : (학교)기간경상이전
- 사업예산 : 일금 오십오억일천일십구만구천원정(W5,510,199,000/국약단체재교부액 제외)
- 예산 변경내용 : 편성목 간 변동 ※총 예산액 변동 없음

편성목	변경 전	변경 후	증감	비고
기타인건비	23,200,000	26,720,000	3,520,000	15년 사업정산을 위한 행정스태프 2개월 연장 운영 (추후 별도기안)
복리후생비	24,085,280	24,085,280	-	변동 없음
행사운영경비	83,385,000	40,209,857	△43,175,143	행사운영 및 회의운영 예산절감으로 잔액 발생
회의비	97,500,000	50,562,000	△46,938,000	잔여예산활용한 과태료, 운영비 등 집행
<b>일반운영비</b>	<b>5,282,028,720</b>	<b>5,368,621,863</b>	<b>86,593,143</b>	
합 계	5,510,199,000	5,510,199,000	-	변동 없음

※예산교부부처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회신한 내용 중 예술강사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과태료 관련 등 신규사안에 대해, 사업비 내 각 지역 운영기관 내규에 따른 예산항목 편성(또는 변경하여 집행) 함의 회신의견을 근거로 함(※관련문서 2 참조)

- 추후 주요 예산집행계획(안)
  - ① 학교예술강사 고용노동청 진정 건(변우균외 8명) 관련 과태료 집행 : 일반운영비 내
  - ② 학교예술강사 5개년 건강검진 미 실시 위반 관련 과태료 집행 : 일반운영비 내
  - ③ 15년도 사업정산을 위한 행정스태프 인건비(16.01월~02월) 집행 : 기타인건비 내
  - ④ 15년도 예술강사 12월 급여 및 3대보험료 집행 : 일반운영비 내
  - ⑤ 예술강사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설명회 관련 운영비 집행(16.01월 예정) : 행사운영경비 내

※ 관련문서 :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-146(2015.03.05.)호,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-1887(2015.12.15.)호 총2부. 끝.

★팀원	팀장	예술교육본부장(직무대리)
협조자	대리	팀장
시행	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( 2015.12.22. ) 접수 ( )	
우	130-8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517	/ http://www.sfac.or.kr
전화	02)758-2031 /전송 02)6008-7347	/ yiji@sfac.or.kr / 공개